

대여학자금 업무관련 자주 찾는 질문(FAQ)

2026. 7.

복 지 운 영 실
(용자사업부)

자주 찾는 질문(FAQ) 목차

Ⅰ 대여학자금 신청 Ⅰ

1. 학자금 신청은 언제 하나요?
2. 학자금 인터넷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3. 학자금은 얼마까지 대부받을 수 있나요?
4. 학자금 신청을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5. 장학금 중복지원으로 대출신청이 불가한데,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6. 학자금 신청은 어떤 경우에 제한되나요?
7. 서류 보완요청 문자(카카오톡)가 왔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8. 학점은행제 신청 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반드시 공단 서식으로 보내야 하나요?
9. 학자금을 신청했는데 처리현황이 궁금합니다.
10. 학자금 대부 후 다른 학교에 등록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11. 학자금 대부 후 다른 학교에 입학했는데 몇 번 더 학자금 대부 받을 수 있나요?
12. 학자금 신청 시 자녀 학교(캠퍼스)를 다르게 신청하였는데 어떻게 변경 하나요?
13. 대학원 등록금도 신청 가능한가요?
14. 국내·외 대학간 이동진학 하는 경우 대부가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Ⅰ 대여학자금 상환 Ⅰ

15. 학자금은 언제부터 상환하나요?
16. 학자금 개별상환 또는 장학금의 상환방법을 알고 싶어요.
17. 학자금 상환한 내역과 잔액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18. 휴직 중에는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19. 2자녀를 동시에 상환 중인 경우 1자녀의 상환유예가 가능한가요?
20. 상환금액을 늘리거나 상환시기를 앞당길 수 있나요?
21. 학생이 졸업 전인데 급여에서 공제되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22. 급여에서 학자금을 공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23. 급여에서 공제 중인데 추가로 납부했더니 이번 달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았어요. 계속 공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24. 대여학자금 상환금이 자녀의 대학에서 공단계좌로 입금되었다는 문자(카카오톡)가 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25. 퇴직자도 학생 졸업 후 2년 지난 때부터 상환하나요?
26. 고지된 금액보다 많이 납부했는데, 환불받을 수 있나요?
27. 학자금을 퇴직 후 연금분할 상환 중 재임용된 경우 학자금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28. 학자금을 퇴직 후 연금분할 중 타 공적연금기관(사학, 군인)에 재임용된 경우 학자금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29. 퇴직 후 연금개시가 도래되지 않은 경우 학자금 잔액을 어떻게 상환 하나요?

Ⅰ 기타사항 Ⅰ

30.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해 학자금 대부내역 및 상환내역을 발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31. 자녀 이름을 개명(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했는데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자주 찾는 질문(FAQ) 및 답변

1. 학자금 신청은 언제 하나요?

- ☐ 국내대학은 학기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고, 해외대학은 납부기한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도 1학기 국내대학 신청기간 : 2026. 1. 19.(월) ~ 4. 24.(금)
- 2026년도 2학기 국내대학 신청기간 : 2026. 7. 20.(월) ~ 10. 23.(금)

2. 학자금 인터넷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 ☐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 ⇨ 연금복지포털 ⇨ 재직공무원 ⇨ 대여자금 대부신청 ⇨ 인증서 로그인 ⇨ 용자사업 ⇨ 대여자금 ⇨ 국내대학 또는 해외대학 선택
- ※ 신청매뉴얼 : 공단홈페이지 -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용자서식 - 대여자금 인터넷신청 매뉴얼

3. 학자금은 얼마까지 대부받을 수 있나요?

- ☐ (국내대학) 등록금 실제 납부액(입학금, 수업료)
- ☐ (해외대학) 연간 \$10,000 이내 등록금 실제 소요액(원화 환산지급)
 - ※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학생회비 등은 대부 불가(단, 항공운항학과 운항실습비 포함)
- ☐ (학점은행제) 당해연도 당해학기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비납입증명서 확인 금액
 - 1학기당 24점 이내, 연간 42학점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제한

4. 학자금 신청을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 공단 고객센터(☎1588-4321)에 유선으로 취소요청

5. 장학금 중복지원으로 대출신청이 불가한데, 해결방법은 무엇인가요?

- ☐ 장학금을 받은 경우 공단대부와 중복되어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교에서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액을 공단 학생가상계좌로 상환한 이후에 대출신청이 가능
 - ※ 중복지원 해소에는 1일 정도의 처리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부 신청이 긴급한 경우에는 공단 고객센터(1588-4321)로 연락하셔서 중복지원 해소 요청
- 가상계좌확인 :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인증서) ⇨ 연금복지포털접속 [복지서비스] ⇨ 대여자금 ⇨ 대여자금 학생별 대부내역
 - ⇨ 대부기본내역 해당자녀 클릭 ⇨ 화면 하단 가상계좌 확인

6. 학자금 신청은 어떤 경우에 제한되나요?

- ☐ 공무원이 재직 중이라도 퇴직 월에 해당하는 경우
- ☐ 과오대부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 ☐ (국내대학) 대부횟수를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 (해외대학) 4년제 4만달러, 6년제 6만달러를 초과한 경우
- ☐ 직업훈련기관, 기술학원, 각종 비인가 학교, 대학원과정, 전문대학원, 계절학기 수강, 어학연수과정, foundation, certificate, 전문학교, 학원 등은 대부 제한

7. 서류 보완요청 문자(카카오톡)가 왔습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 국내대학 대부신청 ■

행정정보(한국장학재단, 행정자치부 주민전산망) 공동이용에 의해 자동심사가 가능하나, 아래 같은 사유로 관련 보완서류의 제출이 필요

- 신규대부 신청자 중 자녀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등록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등록금 고지서」 등
- 공단채무액이 예상퇴직금을 초과할 경우 「보증보험 설정」에 따른 서류

■ 해외대학 대부신청 ■

- 학위 보완은 학사, 준학사 학위가 기재된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비자(F-1, I-20) 등
- 고지서 보완은 학교명, 학생명, 납부기한, 수업료 등 세부내역이 기재된 자료
- 신규대부 신청자 중 자녀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공단채무액이 예상퇴직금을 초과할 경우 「보증보험 설정」에 따른 서류

8. 학점은행제 신청 시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반드시 공단 서식으로 보내야 하나요?

- ☐ 학생이 등록한 과목당 학점 및 수업료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교육비납입증명서” 공단 서식으로 보내 주시거나, “등록금고지서”를 먼저 제출하셔서 교육비를 선 대부 받은 후 공단에서 요청한 날까지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되, **학습과목은 반드시 평가 인정된 과목이며, 이수학점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 ※ 교육비납입증명서 공단 서식 붙임 참조

9. 학자금을 신청했는데 처리현황이 궁금합니다.

- ☐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인증서) ⇨ 마이페이지 ⇨ 제신청/신고내역 ⇨ 대부신청(대여학자금)의 상세내용 [보기]를 클릭하면 현재 진행상황을 확인 가능
- ☐ 고객님의 휴대폰으로 입금안내 문자(카카오톡)가 발송 됩니다. 대부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학자금 대부 후 다른 학교에 등록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 변경된 학교의 등록금이 많을 경우

- 대부받은 등록금을 학생가상계좌로 상환한 후 다시 학자금대부를 신청

☐ 변경된 학교의 등록금이 적을 경우

- 학생 신상변동 신고서와 변경된 학교의 등록금 고지서를 제출한 후, **상환 금액을 안내받아 차액을 상환.**

- ① 서류제출 방법 : 학생신상변동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재학증명서와 등록금고지서를 팩스(064-802-2866)또는 이메일(loan@geps.or.kr)로 제출
※ 학생신상변동신고서 서식 붙임
- ② 온라인 신청방법 :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인증서)
⇨ 연금복지포털접속 [복지서비스] ⇨ 융자사업 ⇨ 대여학자금 ⇨ 학생신상 변동/조기상환신청 항목에서 학생신상변동을 선택하여 신청
※ 온라인 메뉴얼은 해당 신청화면에 게시

11. 학자금 대부 후 다른 학교에 입학했는데 몇 번 더 학자금 대부 받을 수 있나요?

- ☐ 국내대학 총12회 범위 내에서 잔여횟수 대부 가능
- ☐ 해외대학 연간 대부 한도액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

12. 학자금 신청 시 자녀 학교(캠퍼스)를 다르게 신청하였는데 어떻게 변경 하나요?

- ☐ 학생신상변동을 공단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학생신상변동신고서 작성 후 재학증명서를 팩스(064-802-2866) 또는 이메일(loan@geps.or.kr)로 제출
※ 학생신상변동신고서 서식 붙임. 온라인 학생신상변동 신고방법은 FAQ 10번 참고

13. 대학원 등록금도 신청 가능한가요?

- ☐ 대학원 등록금은 대부 대상이 아닙니다.

14. 국내·외 대학간 이동진학 하는 경우 대부가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국내대학 최대 12회, 해외대학 최대 총 \$40,000(6년제 총 \$60,000) 범위 내에서
각각 대부신청 가능

15. 학자금은 언제부터 상환하나요?

- ☐ 재직자의 경우, 대부분은 학생이 **졸업(중퇴)하고 2년이 경과한 후부터** 급여에서
균등분할하여 원천공제(천원 미만은 절사하여 최종 월에 공제)
· 졸업 4년제 이상은 4년 상환, 2·3년제는 3년 상환
· 중퇴 4학기 이상 대부 받은 경우 3년 상환, 3학기 이하 대부 받은 경우 2년 상환
- ☐ 퇴직자의 경우, 퇴직시 퇴직급여·퇴직수당에서 미상환금액을 일시공제하거나,
연금 수급자의 경우 퇴직연금지급 개시 월부터 최대 36개월 분할상환 가능

16. 학자금 개별상환 또는 장학금의 상환방법을 알고 싶어요.

- ☐ **학생 가상계좌**로 상환
· 가상계좌확인 :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인증서)⇨ 연금복지포털접속 [복지서비스] ⇨ 대여자자금 ⇨ 대여자자금 학생별 대부내역
⇨ 대부기본내역 **해당자녀** 클릭 ⇨ 화면 하단 가상계좌 확인

17. 학자금 상환한 내역과 잔액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인증서) ⇨ 연금복지포털접속 [복지서비스] ⇨ 대여자자금 ⇨ 대여자자금 학생별 대부내역
⇨ 대부기본내역 **해당자녀** 클릭 ⇨ 상환내역 및 잔액 확인 가능

18. 휴직 중에는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 ☐ 2025.1.1.이후 **보수 미지급 휴직자**는 휴직월의 다음 달부터 **상환이 유예**되며,
복직후 보수에서 원천공제
- ※ 2025.1.1.이전 휴직자는 개별적으로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인증서)⇨ 연금복지포털접속 [복지서비스] ⇨ 대여자자금 ⇨ 학생신상변동/조기상환신청 항목에서 **보수 미지급 선택**하여 신청 진행

19. 2자녀를 동시에 상환 중인 경우 1자녀의 상환유예가 가능한가요?

- ☐ 2025.7.8.이후 **2자녀 이상의 대여자자금 상환이 시작**되는 경우, 1자녀의 상환이 종료된 익월부터 상환시작
- ※ 2025.7.8.이전 상환자는 개별적으로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인증서)⇨ 연금복지포털접속 [복지서비스] ⇨ 대여자자금 ⇨ 학생신상변동/조기상환신청 항목에서 **다 자녀상환유예 선택**하여 신청 진행

20. 상환금액을 늘리거나 상환시기를 앞당길 수 있나요?

- ① 서류제출 방법 : 조기상환 및 상환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64-802-2866) 또는 이메일(loan@geps.or.kr)로 제출 ※ 조기상환 및 상환조정 신청서 서식 붙임
- ② 온라인 신청방법 :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인증서)⇨ 연금복지포털접속 [복지서비스] ⇨ 대여자자금 ⇨ 학생신상변동/조기상환신청 항목에서 **조기상환을 선택**하여 신청 진행 ※ 온라인 매뉴얼은 해당 신청화면에 게시

21. 학생이 졸업 전인데 급여에서 공제되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 ☐ 학생신상변동신고서를 통해 상환시기를 조정 가능
- ① 서류제출 방법 : **학생신상변동신고서 작성** 후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팩스(064-802-2866) 또는 이메일(loan@geps.or.kr)로 제출
- ② 온라인 신청방법 :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인증서) ⇒ 연금복지포털접속 [복지서비스] ⇒ 융자사업 ⇒ 대여학자금 ⇒ 학생신상변동/조기상환신청 항목에서 **학생신상변동**을 선택하여 신청

22. 급여에서 학자금을 공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 급여일부터 **은행영업일 3일 이내**에 학생가상계좌로 납부(이후 납부시 연체이자 발생)*
- * 연체이자 : 2026년 기준 **5.92%**(정기예금 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
- 가상계좌확인 :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인증서) ⇒ 연금복지포털접속 [복지서비스] ⇒ 대여학자금 ⇒ 대여학자금 학생별 대부내역 ⇒ 대부기본내역 **해당자녀** 클릭 ⇒ 화면 하단 가상계좌 확인

23. 급여에서 공제 증인데 추가로 납부했더니 이번달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았어요. 계속 공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 ① 서류제출 방법 : 조기상환 및 상환조정 신청서의 3번을 기재해 팩스(064-802-2866) 또는 이메일(loan@geps.or.kr)로 제출
- ② 온라인 신청방법 :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인증서) ⇒ 연금복지포털접속 [복지서비스] ⇒ 대여학자금 ⇒ 학생신상변동/조기상환신청 항목에서 **지속공제**를 선택하여 신청 진행

24. 대여학자금 상환금이 자녀의 대학에서 공단계좌로 입금되었다는 문자(카카오톡)가 왔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 ☐ 공단 대부 후 대학 및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을 받게 되면, **장학금의 금액 만큼 이중수혜** 대상이 되므로,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학생 가상계좌를 통해 공단으로 입금하여 학자금 일부를 상환한다는 내용입니다.

25. 퇴직자도 학생 졸업 후 2년 지난 때부터 상환하나요?

- ☐ 퇴직당시 대여학자금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 ① 퇴직급여(퇴직수당, 공제일시금 등)에서 **전액상환** 하거나,
- ② 퇴직연금 개시월부터 연금월액의 **1/2범위 내에서 분할상환** 가능
(※ 퇴직급여청구서에 분할기간 1년, 2년, 3년 중 선택)

26. 고지된 금액보다 많이 납부했는데, 환불받을 수 있나요?

- ☐ 재직자
- ① 서류제출 방법 : 대여자자금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64-802-2866) 또는 이메일(loan@geps.or.kr)로 제출
- ② 온라인 신청방법 :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인증서) ⇨ 연금복지포털접속 [복지서비스] ⇨ 대여자자금 ⇨ 대여자자금 환불신청
- ☐ 퇴직자(연금수급자포함)
- [대여자자금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64-802-2866) 또는 이메일(loan@geps.or.kr)로 제출
- ※ 대여자자금 환불신청서 서식 붙임

- ☐ 학생신상변동 신고는 서류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반드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 ※ 학생신상변동신고서 서식 붙임. 온라인 학생신상변동 신고방법은 FAQ 10번 참고

27. 학자금을 퇴직 후 연금분할 상환중 재임용된 경우 학자금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 ☐ 연금 분할상환은 종료되며, 재직공무원 상환방법을 적용하여 [이전 재직시 잔여상환기간* 내에서 보수에서 원천공제](#)
- 예시) ① 재직시 총 상환기간 : 48개월, ② 재직시 상환한 기간 : 20개월
- ③ 재직시 잔여 상환기간 : 28개월 (① 48개월 - ② 20개월 = 28개월)

28. 학자금을 퇴직 후 연금분할 상환 중 타 공적연금기관(사학, 군인)에 재임용된 경우 학자금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 ☐ 연금종결에 따라 연금분할 상환은 종료되며, [미상환액을 10개월 이내 분할상환](#)
- ※ 잔여 상환기간이 10개월 미만시 잔여상환 기간 내 상환완료 하여야 함.

29. 퇴직 후 연금개시가 도래되지 않은 경우 학자금 잔액을 어떻게 상환 하나요?

- ☐ 퇴직급여(퇴직수당, 공제일시금 등)에서 [전액상환](#) 하거나,
- ☐ [퇴직연금 개시월부터 연금월액의 1/2범위 내에서 분할상환](#) 가능(최장 36개월 분할가능)

30.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해 학자금 대부내역 및 상환내역을 발급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 공단홈페이지(<http://www.geps.or.kr>)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인증서) ⇨ 연금복지포털접속 [복지서비스] ⇨ 대여자자금 ⇨ 대여자자금 학생별 대부 내역 ⇨ 대부및상환내역 버튼 클릭하여 [학생별 대부내역 및 상환내역](#)을 출력

31. 자녀 이름을 개명(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했는데,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교육비납입증명서(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성명	생년월일	() -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주소	교육과정		학사 4년 ☐ 전문학사 3년 ☐ 전문학사 2년 ☐
※ 교육과정, 학년, 학점, 과목당 수강료금액은 필수 항목임 (입학금, 학습과목명, 장학금 등 기재)		학년	학년
납부연월일	학습과목명(평가인정과목에 한함)		수강료금액
합계	(금 원)		점 원
사용목적	공무원 대여자금 대부 신청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교육비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학습과목은 반드시 평가 인정된 과목이며, 당해학기 수강료에 한함 (대부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산조회 결과 비대상자일 경우 환수함)			
신 청 인 (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교육비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교육훈련기관명		(직인)	
전화번호 () -		담당자 성명 : (인)	

※ 신청방법 : 해당서식 작성 후 팩스(064-802-2866) 또는 이메일(loan@geps.or.kr)로 송부

학생 신상변동 신고서				
연금취급기관명			기관 전화번호	
공무원			학생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성명	신상변동사항
※ 신상변동사항란에 아래 변경항목 중 해당 항목을 기재해 주십시오.				
변경 항목		증빙 자료		
1	졸업	졸업증명서		
2	증퇴	제적증명서		
3	학교	재학증명서		
4	학년	재학증명서		
5	휴학	휴학증명서(시작일과 종료일 기재)		
6	성명	주민등록초본(개명 전·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모두 보이도록 발급받으십시오.)		
7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모두 보이도록 발급받으십시오.)		
대여자금 학생신상변동 사항을 위와 같이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신청방법 : 해당서식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팩스(064-802-2866) 또는 이메일(loan@geps.or.kr)로 송부

대여학자금 조기상환 및 상환조정 신청서				
신청인	연금취급기관명		핸드폰 번호	
	성명		생년월일	
학생	성명			
※ 1~4. 중 해당 내용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1. 조기상환 : 학자금 상환개시 전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 정상적인 상환기간(전문대 36개월, 4년제이상48개월)				
공제 개시월		년	월	
2. 기간단축 : 학자금 상환 중 잔여 상환기간을 단축하고 싶은 경우 ※ 잔여개월수 이내에서 조정 가능				
현재 잔여 개월		개월	변동후 잔여 개월	개월
3. 지속공제 : 상환금이 과납되었으나, 상환을 유예하는 대신 지속상환을 원할 경우 ※ 잔여개월수 이내에서 조정 가능				
공제 개시월		년	월	공제 기간 개월
4. 상환유예 : ☐ 보수미지급휴직(공제 개시월만 작성) ☐ 다자녀(변동후 잔여 개월만 작성) ※ 보수미지급휴직 : 복직 익월부터 원천 공제, 다자녀 : 1자녀의 상환종료시점까지 유예가능				
공제 개시월		년	월	변동후 잔여 개월 개월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신청방법 : 해당서식 작성 후 팩스(064-802-2866) 또는 이메일(loan@geps.or.kr)로 송부

대여학자금 환불신청서			
환불 신청인			
생년월일			
연락처			
환불신청금액	원		
환불계좌번호		금융기관	
환불사유 (간략히 기재)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불임 : 1. 통장 사본 2. 신분증 사본			

※ 신청방법 : 해당서식과 불임서류 팩스(064-802-2866) 또는 이메일(loan@geps.or.kr)로 송부